

1.

.

2.

가. :
. :
. :
. : ,

.

2 , 3 7 2 6 .

2 (3) 1 " " " (" ")" .

5 (6) .

5 () .

.

<p>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.</p>	<p>-----.</p>
<p>② (생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간담회의 개최) ① ~ ③ (생략)</p>	<p>제3조(간담회의 개최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간담회의 진행) (생략)</p>	<p>제4조(간담회의 진행)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간사 및 회의록) ①간담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 인을 두되, 간사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한다. 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사본을 다음 간담회에서 배부하 여야 한다.</p>	<p>제5조(간사) 간담회의 간사는 대통 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한다.</p>
<p>제7조(운영세칙) (생략)</p>	<p>제6조(운영세칙) (현행과 같음)</p>